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3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인터컨스텍(민영택)

나. 전화번호 : 02-6121-4979

2. 명칭 : 절취부 및 루프철근 이음연결 구조를 갖는 2분절한 아치부재와, 가설 임시고정장치를 활용한 프리캐스트 개착식 터널 공법 (SegArch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 구조물 설치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기존 개착식 터널을 형성하는 아치구조물을 2분절한 형태로 제작하고, 부재 간 연결부의 구조를 개선하고, 가설 보조장비(가설리프트카, 임시고정장치)를 개발하여 부재 가설조립이 용이하도록 하고, 부재의 천단부 연결 시 종철근 작업을 단순화하고, 횡철근체결 작업 및 거푸집 작업이 필요치 않게 함으로써 시공성과 안전성을 향상하였으며, 천단부에 종철근 무배근부가 없고 접합단면을 확대함으로써 구조적 안정성을 향상한 기술임

<범위>

터널 구조체를 형성하는 아치부재를 2분절한 형태로 제작하고 이를 현장에서 임시고정장치를 활용하여 조립하여 시공하는 개착식 터널 시공기술로, 아치 천단부에 오목하게 절취부를 형성하고, 루프철근 이음구조를 적용하여 횡철근을 구성하며, 2분절된 부재 간 접합면에는 전단키·전단홈을 형성 및 접합 단면을 확대하고, 상기한 아치 부재는 아치의 곡률 조정이 가능한 강재거푸집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개착식 터널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택시요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로 바퀴회전수를 기반으로 택시의 주행거리, 시간 등을 산정하는 택시전기식미터기만을 규정하여 사용해왔음.

그러나, 최근 측량 및 IT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 등 보편적이고 상용화된 기기를 이용하여 위성항법정보를 이용한 위치, 시간 등의 측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위성항법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택시미터 개발을 임시허가한 실증사례에 따라 위성항법정보 기반 택시미터의 구현가능성과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부가서비스 창출가능성이 확인됨.

이에 택시미터의 종류를 기존 바퀴회전수를 기반으로 하는 택시전기식미터기와 위성항법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택시앱미터로 구분하고, 택시앱미터의 검정기관, 검정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시미터의 종류 세분화(안 제94조)

1) 택시미터기의 종류를 택시전기식미터(기존)와 택시앱미터(신규)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택시미터의 검정범위를 명확히 함

나. 택시앱미터 검정종류, 검정신청 방법 등 규정(안 제95조)

1) 택시앱미터를 신규 개발하거나 택시 요금산정기능을 변경한 때, 개발한 택시앱미터를 사용하려는 경우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검정을 신청하는 서식 및 절차 등을 규정함.

다. 택시앱미터 검정기관 지정(안 제96조)

1) 택시앱미터의 전문검정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지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전화 044-201-4755,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